

# 무배당 하나손보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보험상품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7-4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12조-제13조에 의거하여 “하나손해보험”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1. 운용상품 안내

상품명	무배당 하나손보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
상품제공기관	하나손해보험
상품특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자산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이율보증형 상품으로, 가입자가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해당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최초보험료 납입 시점 또는 단위보험의 적립금 이전 시점의 적용 이율을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확정 적용하는 상품
보험종목의 세목	거치식_이율보증형,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
적용이율 만기	거치식 : 1년, 2년, 3년, 5년 자유적립식 : 1년, 2년, 3년, 5년
적용이율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a href="http://www.hanainurance.co.kr">www.hanainurance.co.kr</a> )에 공시된 공시이율 적용 (단, 최저보증이율은 없음)
공시이율 산출기준	공시이율 결정 : 공시기준이율,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공시기준이율(%)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
중도해지 이자율	이 보험의 이율보증기간(만기)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b>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적용이율의 50%</b>
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b>적용이율의 50%</b> ) 적용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다음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 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7. 만기일 직전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 재예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 및 보험종목의 세목이 <b>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재예치</b> 됩니다.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재예치되며 재예치시점의 적용이율 적용합니다. ※ DC, IRP제도 가입자의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프로세스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계약서류 참조
-----	---------

## ■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

[만기 전 해지 관련]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적용이율의 50%)이 적용됩니다.

## 2. 유의사항

### (1) 예금자보호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2)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조, 동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하여 당사와의 개별상품 계약체결 시 동법 상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금지되는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의 발생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체결일(계약서류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법 계약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해당 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 (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한 경우 하나손해보험 고객센터(1566-30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www.fss.or.kr](http://www.fss.or.kr))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